

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4-6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	2003.3.
제출자	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2002.12.31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 · 공포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·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금액을 정함 (안 제3조).
- 나.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5조).